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5월 10일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퇴임하는 전직대통령의 예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 3명,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 신설조직·정원의 평가기간을 직제 시행규칙에서만 정하고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직제를 개정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방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표 중 평가기간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등 정원표(제60조제1항 관련)

총계	8
별정직 계	8
전직대통령의 비서관(고위공무원단)	3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고위공무원단)	2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6급 상당)	1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6급 상당)	2

비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등 정원 중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명(고위 공무원 1명) 및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1명(6급 상당 1명)은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의 비서관 및 운전기사의 정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3